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정42-74748	(전화번호 903-6564)	건결규정 조항 건결사항
처리기간	구 청 관		시 관
시행일자	83.	전결	
보존연한			
보조 기관	11.09 83.11.30 도시정비과장 김성우 도시정비계장 김성우 도시정비과장 김성우		80.11.30 83
기안책임자	정병주 '83.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창조		37157
비 고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제/안) 내부결재			
제목: 등거			
1. 도정42-35663호(83.11.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고시 제 271호(79.6.25)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된 양구 관내 삼문동 52-9 외 5필지 33년 버스정류장이 버스선 변경으로 인해 강동구로 정류장시설 이전 하겠으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하였거 내용 검토한바			
3. 우이동 지역에 현재 시내버스정류장이 5개소가 있으며 주민수용에 충분한 노선이 확보되어 있어 총주차장의 존치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옵기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 하고자			
4. 도시계획법 제 16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주민의견청취하여 본 공람공고에 따른 예산 (주)전화연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자			

부의(부)는... (주)전화연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16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간 주민의견청취하여 본 공람공고에 따른 예산 (주)전화연수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2안) 공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71호 (19.6.25)로 결정된 도봉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폐지에 따른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도시계획법 제16조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14일간 응람에 공람합니다.

2. 공람공인: 도시계획안이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본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83. . ~ 83. 12.

나. 공람장소: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83.

서울특별시 장

* 공람개요 (도시계획안)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폐지	여객자동차정류장	상문동 52-9 외 5필지	2,160	33년 진화율수

(제3안)

수신: 서울특별시 장

참조: 공보관

제목: 시보 및 신문공람공고 게재의뢰

1. 당구 관내 상문동 52-9 일대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에 따른 별첨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16조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공고하고자 시보 및 신문게재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간지: 1개 및간지 / 최공고.

나. 공고표지물 :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주)진화물수에 홍보방부

첨부: 공고안 사본 3부

(제4안)

수신: 강동구 삼전동 48-10 진화물수주식회사 대표이사 문봉철

제목: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 요청에 따른 중간회시

1. 도정442-32663호 (83. 11. 거)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 요청한 당

구 관내 삼문동 52-9 외 5필지 2,160M²에 대하여

3.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폐지하고자 신문공람공고 하였

으며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시일이 많이 소요

되는점 양지하시고

4. 본 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는} 귀사에서 부담 남부 (추후 별도 청

구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안 사본 1부

(제6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 영안에 따른 공람공고

1. 강구 관내 삼문동 52-9 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 (여객차
정류장)의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제 16조 2 및
등년시행령 제 14 조 2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였기 통보하
니

2. 해당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등에서 홍보한
것이며 입안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람기간내 도시정비
과로 제출하기 바람.

첨부: 공고안 사본 및 위치도면 1부

1/1



서울특별시 공고 제 83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임안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77호(79. 6. 25)로 결정된 도봉구 관내 도시 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폐지에 따른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도시계획법 제16조2및 동법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 14일간 공람여 공합니다.

2. 공람중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본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83. . . -83. 12.

나. 공람장소: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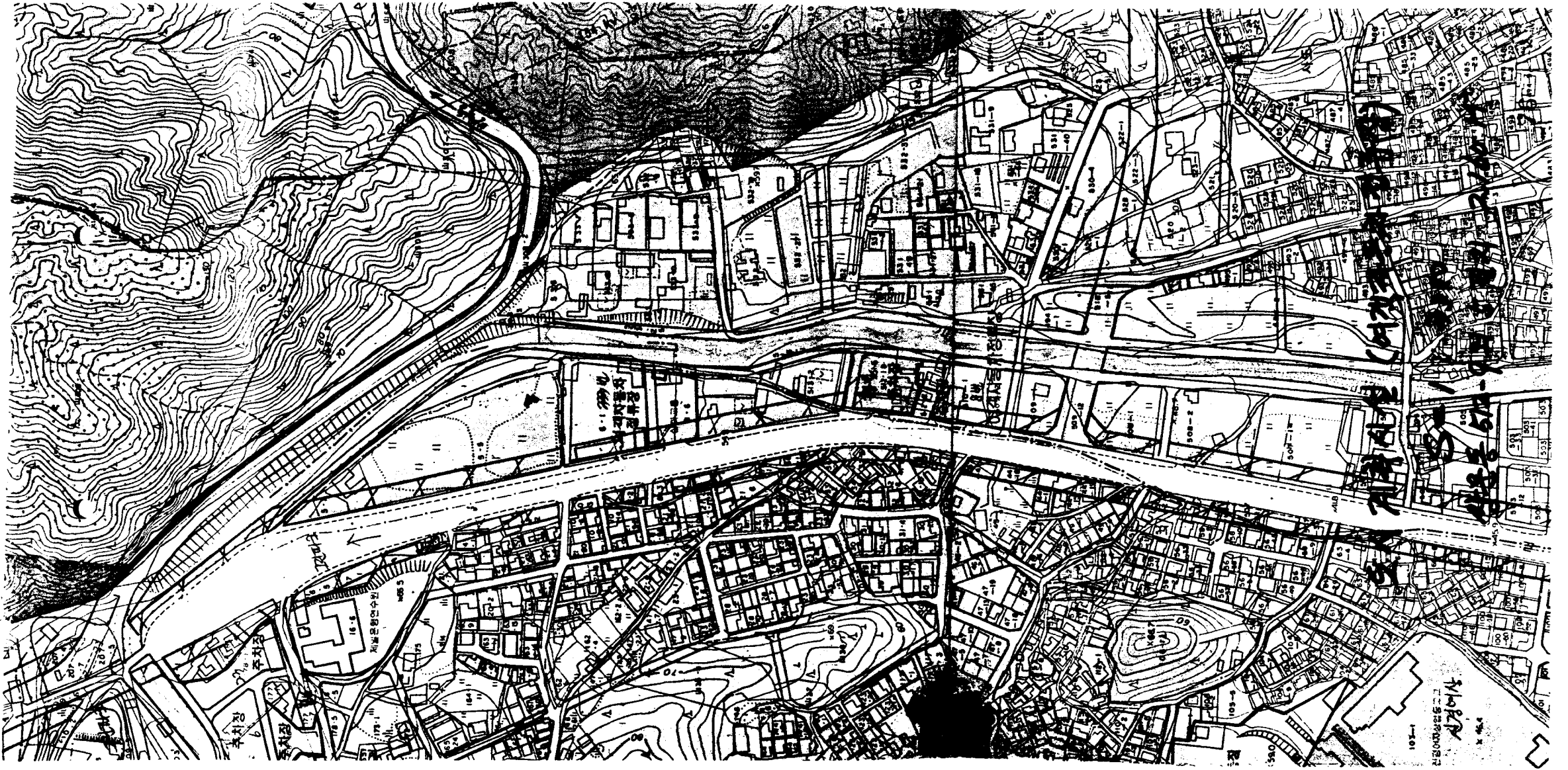
83. . .

서울특별시청

* 공람개요(도시계획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폐지	여객자동차정류장	쌍문동 512-9외 5필지	2,160	33번전환은수





NARR
L. S. STATION
1-101

추치강
추치강
추치강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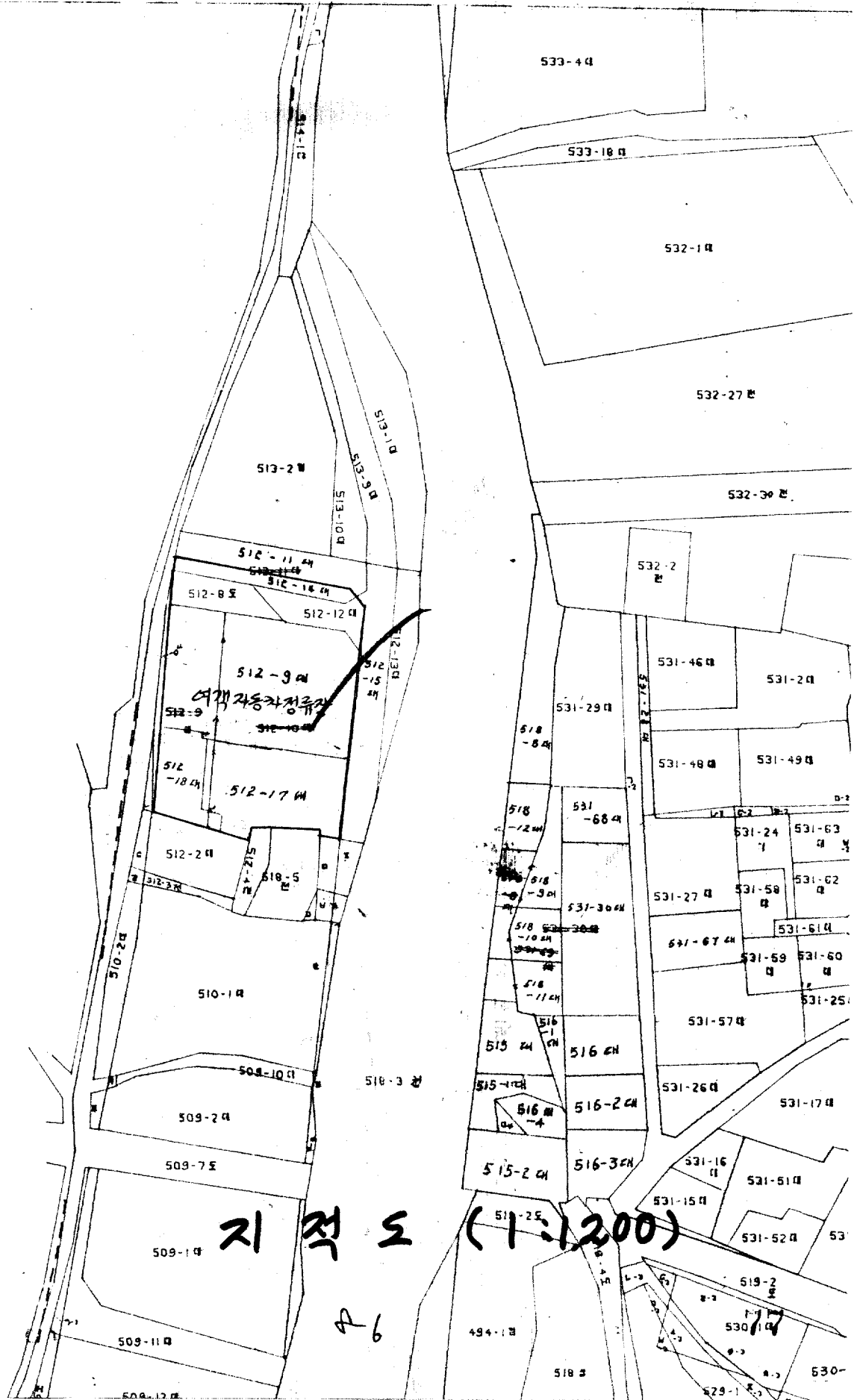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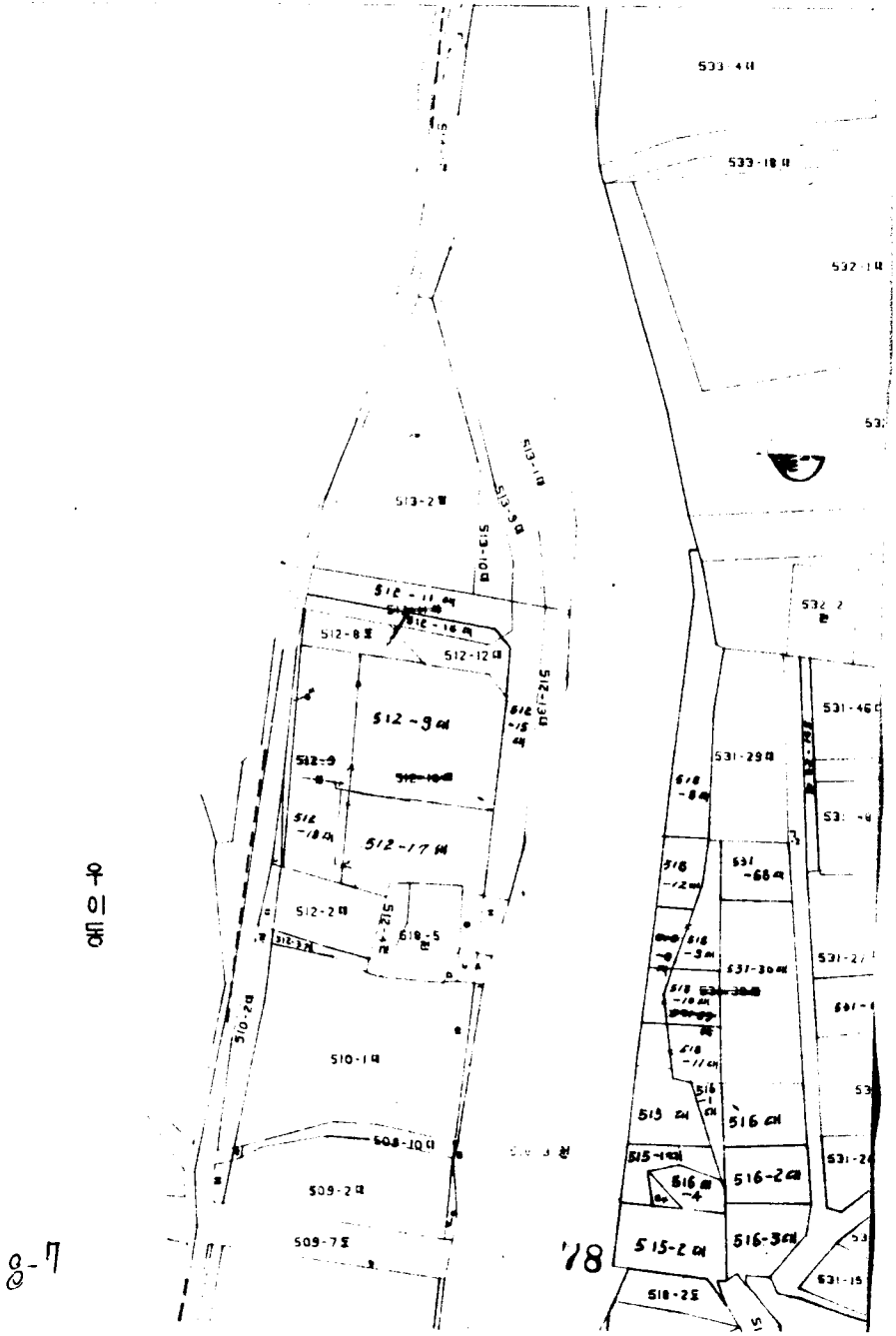
이 도



지 적 도 (1:120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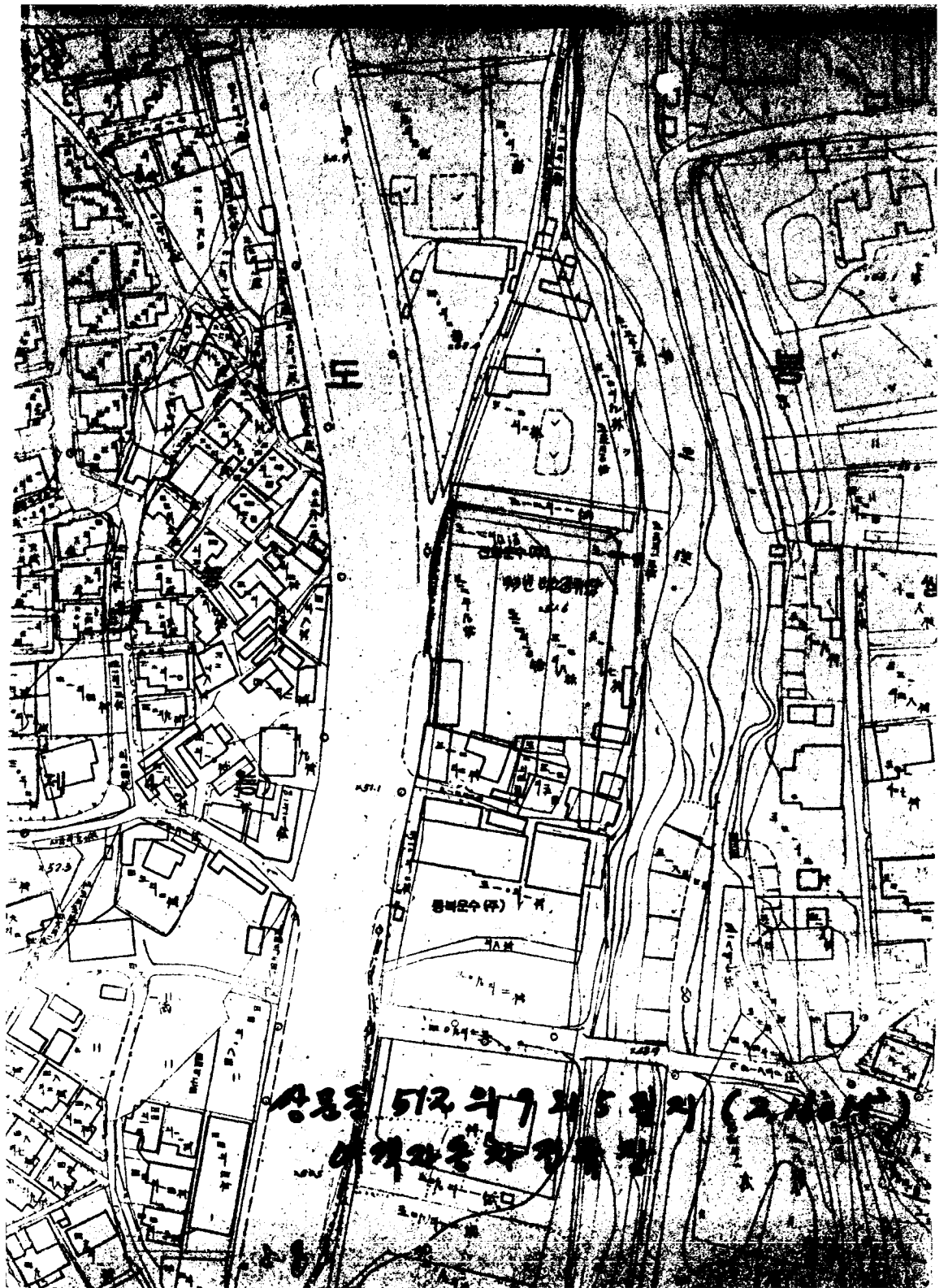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도농구상면농 지적도 (31매지)



대지번호

8-7

78



상동동 512 의거 의5 필지 (2필지)
이적외동화정동 필지